

## 불법피라미드 피해 예방을 위한 신고 안내문

과거 불법피라미드는 오프라인 접촉으로 판매원을 모집하고 조직을 확장하여 왔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개인 블로그나 SNS를 통해 수입이 매우 많은 신유형 사업 혹은 재택근무 가능한 부업이라고 홍보하는 방식으로 판매원을 모집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신종 수법의 불법피라미드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미끼로 물품 구매나 회원 가입을 권유한다면 불법피라미드 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며, 사업의 실체가 과장되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관련 상세내용(유관기관 주요 단속사례, 대처법 등)을 참고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제조합은 신고·제보에 대해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불법피라미드 업체를 적극 제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SNS·블로그를 통한 불법피라미드 홍보 예시 >

### 비상경제중양대책본부 관계부처회의 보도자료('21.12.2.)

- 미등록 불법 피라미드 업체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경찰 고발 사례 지속  
→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 피해 우려
- 코로나19 이후 합숙·집합교육 제한 등으로 불법 피라미드가 다소 감소한 측면은 있으나, 비대면 방식의 신종수법 확산에 대응 필요

## □ 최근 불법피라미드 사례

### 최근 불법피라미드 사례

- ① 주로 교회 등지에서 노인, 북한이탈주민 등을 모아놓고 합숙을 시키면서 자사 제품이 만병통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판매원이 되면 하위판매원들의 판매활동으로 인해 추천수당을 지급받는 등 저절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21.9.22. 서울중앙지검/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 최근 다단계.사기 범행은 이 사건과 같이 제품을 미끼로 함과 동시에 자체 개발하여 경제적 가치를 장담할 수 없는 '코인'을 이용한 범행으로 진화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②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를 염가에 매입한 후 개발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230명으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86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직급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790억 원 규모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 ('21.6.20. 대구지검/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 ③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 등 통합 금융플랫폼 사업과 그와 관련한 코인 매매 사업 등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고, 매일 투자금액별 추천수별 직급별 수당 등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882억 원 상당 편취 ('21.10.15. 서울중앙지검/사기, 유사수신법, 방문판매법 위반)

\* 검찰청 보도자료 참조

## □ 공제조합 신고포상제 접수제보 사례

### ① 방문판매업체로 신고한 후 실제 다단계판매 방식 영업

- ○○업체는 화장품을 방문판매 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대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함

### ② 통신판매업체로 신고한 후 다단계판매 방식 영업

- ○○업체는 통신판매업체로만 신고한 후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총판·특약점·대리점을 모집한다고 홍보하며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함

\* 상기 2건 모두 경찰 수사의뢰 완료('21.09.30.)

## □ 불법피라미드의 특징

### ①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판매원 모집

자사의 제품을 구입하거나 투자하면 단기간에 수십 배의 고수익을 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수익을 보고 있다고 거짓 선전

### ② 다단계 방식으로 가치 없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투자자를 모집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가치가 낮고 품질이 조악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여 하위판매원·투자자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 지급

## □ 다단계조직을 이용한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특수거래과) 및 관할 시도 홈페이지에서 다단계판매업 등록 여부 확인

※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도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에 가입된 다단계판매 회사인지 여부 확인 가능

- 공정위·경찰·관할 지자체·공제조합에 신고·제보

## □ 신고포상제 안내

-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도 개요

- 관할 시·도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미등록 다단계판매 업체”를 **공정위·공제조합에 제보** 시 공정위·경찰 등 유관기관 회의 실시를 통해 선정된 건에 대해서 공정위·공제조합이 **포상금(건당 50~200만원) 지급**

※ 특별신고기간에 한해 최대 500만원 지급

### ☞ 신고처

- ① 공정위 : 1677-0007 [www.ftc.go.kr](http://www.ftc.go.kr)

※ 제보방법, 유의사항, 포상절차 등 Q&A 상세내용 참조

- ② 양 조합 홈페이지 신고포상제 게시판

☞ 우리조합 신고방법 안내

- ① 직접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 신고게시판(클릭)
- ② 소비자권익보호센터 연락처: 080-860-1202
- ③ 소비자권익보호센터 이메일: [macco@macco.or.kr](mailto:macco@macco.or.kr)
- ④ 우편: [0617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3층 (삼성동, 덕명빌딩)